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정사항>

| <다중이용시설 등> |   |  |                    |
|------------|---|--|--------------------|
| 다중이용시설     | 3단계   | 4단계  | 비고                 |
| 식당·카페      | ▲ 종전과 같음  |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포함)<br>▲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 운영·이용 금지<br>→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
| 결혼식장       | ▲ 종전과 같음<br>*단,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웨딩홀별 4m <sup>2</sup> 당 1명 가능 | ▲ 종전과 같음<br>*단,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웨딩홀별 4m <sup>2</sup> 당 1명 가능              | -                  |

|   |  |  |   |
|---|--|--|---|
| <p>준대규모점포<br/>· 300m<sup>2</sup> 이상<br/>종합소매업</p> | <p>▲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권고)<br/>※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화<br/>조치 가능</p>  | <p>▲ 출입자명부 작성·관리(권고)<br/>※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br/>화 조치 가능</p>  | <p>준대규모점포는 매장<br/>면적 300m<sup>2</sup> 이상인 경<br/>우만 적용</p> |
| <p>학술행사</p>                                       | <p>▲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br/>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br/>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br/>워크숍 등 명칭 무관)</p> |  | <p>학술행사 '정의' 명시</p>                                       |
| <p>사적모임</p>                                       | <p>▲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br/>지 사적모임 가능<br/>※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p>  | <p>▲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정 및<br/>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br/>사적 모임 가능<br/>※ 접종 미완료자 4 또는<br/>2명까지 가능</p>  | <p>접종 미완료자 최대<br/>-18시 전 4명<br/>-18시 후 2명</p>             |
|   | <p>▲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족모임<br/>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br/>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br/>※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p>                            | <p>▲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정<br/>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br/>가능하되, 예방접종완료자<br/>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br/>※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br/>※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br/>모임 제한(6명) 내에서 가능</p> | <p>기간: 9.17.~9.23.</p>                                    |

###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준)단계 사적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 기간(9.17.~9.23.) 가족 모임)

가. 적용 기간: 2021.9.6.(월) 0시 ~ 2021.10.3.(일) 24시

나. 적용 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 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 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 대상 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편·홀덤편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업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이·미용업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②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③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 ④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3단계)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4단계)사적모임 5명(18시~익일 05시 3명)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 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과 '추가적용 수칙' 적용

■ (시험 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⑤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⑥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⑦ 학교(등교)

○ 3단계/4단계: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3.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4.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

주무관 **박혜수** 과장 **김재준** 전결 2021.9.6.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1020 (2021. 9. 6.)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oyeah5@motie.go.kr / 대한민국 공개